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1 민 사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9나65384 보증금청구의 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br>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변동열, 김호준       |
| 피고, 피항소인  | 경기신용보증재단<br>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br>담당변호사 최단비  |
|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가단4693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 12. 18.                           |
| 판 결 선 고   | 2021. 1. 29.                            |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183,553원 및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21.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2,183,553원 및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153,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당초 보증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지연손해금의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고,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신용보증약정

피고는 2017. 11. 22.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80,000,000원, 피보증인 소외 회사, 보증기한 2020. 11. 20.,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 부분보증비율 90% 등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원고와 아래와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대출과목           | 대출일          | 만기일           | 대출액  | 이자율                                    | 지연배상금률  |
|----------------|--------------|---------------|------|----------------------------------------|---------|
| 기업운전일반<br>자금대출 | 2017.11. 22. | 2020. 11. 20. | 2억 원 | 변동금리<br>[기준금리(CD<br>3개월물) +<br>2.234%] | 최고 연15% |

##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소외 회사는 2018. 4.경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8. 5. 28.경 피고에게 원리금 합계 180,861,928원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서 정한 협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이고,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31. 기준 보증금 원리금 합계 182,183,553원 및 그중 원금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경기도와 사이에 체결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전자금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의 보증채무는 전액 면책된다.

## 나. 인정사실

### 1) 이 사건 융자지원 협약

원고는 2017. 3.경 경기도와 사이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협약(이하 '이 사건 융자지원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3조(업무의 수행)

- ① “도”는 조례 제11조 및 제14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3조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은행”에게 통보한다. “도”는 융자지원 대상자 결정업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라고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에는 “경기신보”가 “은행”에 통보한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가 지정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
  2. 제1호에 의해 취급한 대출금 내역을 “경기신보”에 통지
  3. 제1호에 의한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
  4. 제1호에 의하여 대출받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
- ③ “은행”은 제1항에 의하여 “도”로부터 통보받은 중소기업 등이 대출신청을 하는 때에는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한다.

#### 제4조(대출조건)

“은행”은 본 협약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출조건을 준수한다.

1. 대출금액은 “도”가 결정하여 통보한 금액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는 “은행”이 본 협약대상 대출 차주별로 산정하되 제5조에 따라 “은행”이 고시하는 최고금리 이하로 한다.
3. 대출기간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에서 정한 자금별 대출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위 제2호의 대출금리에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를 기업부담금리로 하여 당해 대출 기업 등으로부터 징구한다.
5. 위 4호의 이차보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차보전금은 “도”가 지급하며 “은행”은 제6조의 내용에 따라 지급을 신청한다.
6. 운전자금의 경우 약정채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대출기업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상환을 원하는 때에는 “은행”은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이 사건 업무협약

원고는 2017. 6. 30.경 피고와 사이에 'A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기술금융 보증지원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sup>1)</sup>,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은행이 재단에 출연하는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은행이 추천하는 기술신용평가(TCB, Technology Credit Bureau) 보유 기업에 대해 재단이 신용보증(이하 ‘협약보증’이라 한다)하고 은행이 대출취급함으로써 도내 기술성 우수기업의 성공적인 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약관 및 면책기준)

본 협약의 내용과 재단이 은행에 기통지한 부분보증 약관 및 면책기준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용어의 정의)

- ① “특별출연금”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은행이 재단에 특별히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1심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이 사건 용자지원 협약의 실현을 위한 후속협약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협약을 목적 및 취지 등이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협약으로 판단하였다.

- ② “신규보증”이라 함은 본 협약체결 이후 은행이 제9조의 지원대상 기업에게 신규 대출하는 대출금에 대한 재단의 개별보증을 말한다.

#### 제6조(특별출연)

- ① 은행은 기술신용평가 보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재단에 3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 제9조(지원대상)

- ① 협약지원 보증대상은 기술신용평가의 기술등급이 T-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협약보증의 대상자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운전자금의 신규대출로 하며, 근보증서에 의한 한도거래대출은 대상자금으로 운영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보증절차 등)

- ① 은행은 재단에 협약보증 신청시 신용보증신청서 ‘비고’란에 “본 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기술금융 보증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협약보증 추천 건임”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상기업을 추천한다.  
② 은행이 추천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결정은 재단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재단은 본 협약보증에 의한 보증서 발급시 아래와 같이 보증특약을 부여하기로 한다.

[2017년 특별출연] “본 보증서는 귀 행과의 「기술금융 보증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임”

### 3) 이 사건 대출과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

가) 원고는 2017. 11. 12.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대출을 하였는데, 그 대출과목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대출금리를 할인받는 '경기도운전자금 대출'이 아니라 '일반운전자금 대출'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① **본 보증서는 12개월 거치 24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취급하실 것**  
**(상환주기 3개월)**

**② 본 보증은 경기도 운전자금(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임**

**③ 본 보증서는 귀 행과의 2017년 “기술금융 보증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임**

**4)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가) 피고는 금융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전자신용보증서 등 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피고가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형식의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신용보증조건”은 신용보증서에서 명시한 채권자, 피보증인, 보증금액, 보증채무최고액, 보증기한, 보증방법, 대출과목, 보증비율 및 보증특약을 의미합니다.

**제5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1.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

**제21조(보증특약의 운용)**

① 보증특약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채권자(원고)는 대출실행, 담보취득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증특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22조(면책)**

① 재단(피고)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한 때

4. 제5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때

② 제1항의 세부내용 및 면책범위에 대하여는 재단(피고)이 정하여 채권자(원고)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합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22조에 따라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이

하 '이 사건 면책기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 면책기준(대출보증, 비은행대출보증용, 보증부서민대출협약보증용)                                                                                                                                                                               |                                                                                                    |
|------------------------------------------------------------------------------------------------------------------------------------------------------------------------------------------------------------------|----------------------------------------------------------------------------------------------------|
| 면책사항                                                                                                                                                                                                             | 면책범위                                                                                               |
| 1. 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하였을 때<br>가. 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 위반<br>○ 채권자 영업점, 채무자, 보증부대출과목이 다른 경우<br>다. 위 “시설자금보증 관련 보증특약” 이외의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br>(1) 보증특약에서 한정한 신용보증대상채무가 아닌 때<br>(2) 보증특약에서 제한한 보증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 | 재단(피고)책임분담금액 전액<br>(종속채무도 면책)<br><br>신용보증대상채무가 아닌 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종속채무<br><br>보증책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및 논의의 순서

이 사건 대출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을 확정지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위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에 터 잡아 이 사건 대출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한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을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란에는 '기업운전일반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2항은 '본 보증은 경기도 운전자금(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임', 제3항은 '본 보증서는 귀 행과의 2017년 "기술금융 보증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먼저 특약사항 제2항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그동안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경기도 운전자금'이라고 기재한 보증에 대하여 이 사건 용자지원협약에 의한 보증, 즉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의한 운전자금 대출'로 취급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② '경기도 운전자금(벤처창업기업)'이라는 용어는 '일반 기업운전자금'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의한 운전자금 대출'이라는 용어를 기재 편의상 줄여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의한 운전자금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자지원협약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이 사건 용자지원협약 제3조에 따르면, 경기도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지원 대상자 결정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통보받은 해당 대상자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용자지원협약은 원고와 경기도 사이의 협약으로서 구체적인 통보의 형식과 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그 동안 전자시스템 미비<sup>2)</sup>로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융자지원 결정통보서를 발급하여 융자지원 대상자가 직접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보하여 왔다. 융자지원 대상자가 위 결정통보서를 대출은행에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신용보증의 내용과 효력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서 특약사항 제3항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특약사항 제3항에는 '귀 행과의 2017년 기술금융 보증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할 때에 『2017년 특별출연 본 보증서는 귀 행과의 "기술금융 보증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토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특약사항 제3항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서 발급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보증특약과 일치하고,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기술신용평가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소외 회사를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신용보증 대상기업으로 추천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의미에서 특약사항 제3항을 기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위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의한 운전자금 대출'이 아니라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대출, 즉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이 사건 융자지원협약에 의한 보증과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목적, 취지, 계약주체 및 내용이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협약이다(이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위 2개 협약이 상호 모순되거나 배

---

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융자지원 결정통보서를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피고의 경우 그와 같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한다.

척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양립 가능하므로 각 협약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가지 성격의 보증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융자지원협약에 따른 보증'과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3) 이 사건 대출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기재와 같이 그 약정서 문언에 이 사건 융자지원협약에 따른 보증과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동안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융자지원협약에 따른 보증을 우선 적용하여 그에 맞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 사례로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0호증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출 사례들은 이 사건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서에 '이 사건 융자지원협약에 따른 보증'을 의미하는 문언과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을 의미하는 문언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융자지원협약에 따른 보증'으로 보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하였다는 점에서 참조할 여지가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들은 대출신청자들이 해당 융자지원 결정통보서를 금융기관인 원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확인한 경우로 볼 수 있어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신용보증약정서에 이 사건 융자지원협약에 따른 보증과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융자지원협약에 따른 보증을 우선시한다는 오랜 관행이나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

고가 피고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차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결정통보'(이 사건의 경우는 을 제1호증)를 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적극적  
 으로 피고 혹은 차주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되게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 피고로서는 보증인으로  
 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이 사건 융자지원협약에  
 따른 보증과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면, 원고가 그 중 하나인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으로 보고 그에 맞춰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이상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물론 단순히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만을 의미하는 경우의 신용보증서  
 와 이 사건 융자지원협약에 따른 보증 및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의 양자를 모  
 두 겸유하는 신용보증서의 기재 방식이 아래와 같이 다르기는 하다.

|                                                        |                                                                                                                                                               |
|--------------------------------------------------------|---------------------------------------------------------------------------------------------------------------------------------------------------------------|
| 업무협약 및<br>융자지원협약<br>지원대상자<br>신용보증서<br>(을제10호증의2<br>참조) | 1. 본 보증은 경기도 운전자금(신기술기업)에 대한 보증임.<br>2. 본 보증서는 귀 행과의 2017년 "A 은행 기술금융 보증지원 업무협약" 에<br>의한 보증임.<br>3. 본 보증서는 12개월거치 24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취급하실 것(상<br>환주기 3개월). 끝. |
| 업무협약<br>지원대상자<br>신용보증서<br>(을제9호증의1<br>내지 4 참조)         | 1. [2017년 특별출연] "본 보증서는 귀 행과의 「기술금융 보증지원 업무협약<br>」에 의한 보증임."<br>2. 본 보증서는 12개월거치 48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취급하실 것(상<br>환주기 1개월). 끝.                                  |

이와 같이 피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통해 보증 대상 대출항목에 대한 피고

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적인 문의나 확인절차를 거쳤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랜 기간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래관념상 금융기관인 원고가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조건에 위반한 대출을 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는 유사 하급심 판결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지만, 수원지방법원 2018나87798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9460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6891 사건은 이 사건의 경우처럼 특약사항 제2항만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3항은 기재되지 않은 사건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해 단순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 원리금 합계 182,183,553원 및 그중 원금 18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9.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1.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하고 원금 전부를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이수진

판사      박동복